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정재우(Jae-Woo Jung)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시간강사 - 제1저자

이길남(Kil-Nam Lee)

가천의과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교신저자

목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 참고문헌 |
| III. FTA 주요 원산지규정 및 내용 | ABSTRACT |
| IV.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 기준의 비교 | |

국문초록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주제어 :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결정규정, 세번, 세번변경기준, 실질변형기준

I. 서론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향후 FTA가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이해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적은 부존자원을 지니고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써는 FTA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시장’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거의 3년 만인 2002년 10월에 칠레와 공식적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한국 농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정치적 지연에 따라 국회비준 절차는 양국간 공식 서명 후, 1년이 지나 2004년 2월에 마무리되어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발효), 한·EFTA¹⁾ FTA(2006년 9월 발효), 한·ASEAN²⁾(2007년 6월 상품협상 발효, 2009년 5월 서비스협상 발효, 2009년 9월 투자협상 발효) 등이 현재까지 효력이 유효하고 한·미국(2007년 6월 서명), 한·인도 CEPA³⁾(2010년 1월 발효), 한·EU FTA(2011년 7월 잠정발효), 한·페루 FTA(2011년 8월 발효)를 체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FTA를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多)국가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이와 더불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지고, 이와 같은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른 차별적 관세율은 기업의 해외투자방식과 수출거래를 포함한 해외지향적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역내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부품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많은 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각

1)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 스톡홀름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및 사회 및 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기 위해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모두 10개국으로 늘어났다.

3)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CEPA)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FTA 원산지규정은 학계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 모두로부터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불식시키고 FTA의 본질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나 체결예정인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에서 논의된 원산지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먼저, 비록 아직 효력이 없는 한·미국 FTA를 선정한 배경에는 미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이기 때문이고 향후에도 미국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속가능한 교역상대국이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EU(European Union)가 현재 우리의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고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효력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ASEAN FTA를 본 연구에서 관찰 대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한·ASEAN FTA가 이미 효력 발생 중에 있고 ASEAN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제블럭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경제적 환경이나 구조가 상이하고 특히,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른 경제권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를 선정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할 한·미국 FTA 원산지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논리 전개상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미국과 FTA는 반드시, 그리고 곧 체결될 의 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4) 2010년 1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이을 새로운 신흥국가군으로 ‘마빈스(MAVINS)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마빈스(MAVINS)는 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이며 이 중 ASEAN 2국이 참여하고 있다.

II.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1. 국제무역거래에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중요성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세계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다자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확산 및 심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⁵⁾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생산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또한, 정부나 기업은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수입품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은 체약상대국 이외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체약국 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⁷⁾

한편, 원산지 규정은 아웃소싱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국가간에 교역되는 물품 생산에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원자재 및 부품 등)이 이용되는 등 국제적인 아웃소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의 교역증가는 원산지결정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⁸⁾

이처럼 원산지 규정은 국제무역상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은 이 슈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하다. 그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관련 국제적 표준도 부재하고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비관세장벽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5) 심동섭·서정석,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06, pp.80-81.

6) John J. Barcelo III,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rnell Law School, 2006, pp.2-3.

7) Richard Baldwin(2006.09), “Multilaterilising Regionalism :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 1254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22-31.

8) 안재진,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pp.5-6.

하고 있거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된다.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개념적 정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원산지 기준(Origin Criterion)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를 말하며, 동식물과 1차 산품의 경우에는 재배·사육·수확·어로·번식·수렵 및 채굴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한다.⁹⁾

한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nationality) 즉,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이며¹⁰⁾,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¹¹⁾ 대표적인 국제적 원산지규정을 내포한 국제규칙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일명,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의 특별부속서 K가 있다.¹²⁾ 그밖에 ‘원산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를 목적으로 1883년에 제정되어 체결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회원국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내법령의 제정 및 집행을 허용하고, 나아가 그러한 원산지 표시 요구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는 1947 GATT 규정과 1994년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¹³⁾ 국내의 법령에서도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령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있다.

한편,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

9) 윤영호,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2009.07, p.79.

10)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defines Rules of Origin as “thos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determinants of general application applied by any member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provided such ROO are not related to contractual or autonomous trade regime leading to the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going beyond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f GATT 1994”.

11)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05-21」,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pp.24-29.

12) John. Coyle, “Rules of Origin as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2004, p.545.

13) Matthew. Schaefer, “Ensuring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lement the wto system : US unilateralism a supplement to wto initia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Law*, Vol.10, No.3, 2007.07.30, pp.589-590.

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무임승차(free-riding)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¹⁴⁾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원산지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데,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등의 경우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소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히 정확한 무역통계나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¹⁵⁾

2.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규정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논문으로 김석오·정재완의 연구가 있다. 그는 특혜원산지 입법체계 간소화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별법 등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이 많아 원산지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 관세법 체계에 특혜원산지규정을 수용하는 단일 입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¹⁶⁾ 이어서 정재완은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에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여러 FTA 협정문의 문헌을 고찰하여 완전생산기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¹⁷⁾

한편, 외국의 원산지 규정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남풍우·안재진은 그의 연구에서, EU가 채택하고 있는 Pan-Euro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EU의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EU와 FTA 협상시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 점검해야 되는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⁸⁾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손동준도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

14) OEC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ultilateral Tradeing System : Rules of Origin," TD/TC/WP(2002)33/FINAL,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2002.07, pp.7-8.

15) EU,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004.09,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handbook_en.pdf), 2004.09, p.8(이하 A User's Handbook이라 한다).

16)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계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조세연구포럼, 2010.04, p.44.

17) 정재완,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세학회, 2008.08, p.122.

18)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정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¹⁹⁾ 채형복·황해륙도 그의 논문에서, 한·EU FTA 상의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한·EU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한·미 FTA 원산지 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²⁰⁾ 분석 결과, 한·EU FTA의 원산지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규정체계에 있어서 의정서(Protocol) 방식을 채택하면서, EU무역위원회에 원산지의정서에 대한 개정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을 연구한 연구자도 있다. 조정란은 한국과 일본의 원산지규정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한·일 FTA 협상시 원산지 규정 설정에 대한 기본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²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은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논의 결과, 동아시아 FTA를 통한 단일화된 원산지 규정을 갖게 될 경우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여전히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은 FTA의 복잡한 규정 및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²⁾ 이와 유사하게,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산지규정을 NAFTA 유형과 PANEURO 유형으로 구분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한·칠레와 한·미국은 NAFTA 유형을 수용하고 있고 한·EFTA는 PANEURO 유형을 따르고 한·싱가포르와 한·ASEAN FTA는 NAFTA유형과 PANEURO 유형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³⁾

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은 그의 논문에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원산지 규정 활용과 그 발전 역사를 기술하였고 향후 원산지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²⁴⁾ 또한, 최창환은 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의 연구를 통해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국, 한·인도, 한·EU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스파게티볼 효과

재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1-24.

- 19) 손동준,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세학회, 2008.08, pp.152-142.
- 20)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02, pp.599-600.
- 21)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02, pp.253-254.
- 22)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연구보고서』1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30, pp.146-147.
- 23)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30, pp.7-8.
- 24) 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 “Rules of Origin: Evolving Best Practices for RTA/FTAs,” Discussion Paper Series, No.2006-01,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January 2006, pp.1-18.

(Spaghetti Effect)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⁵⁾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FTA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체결국의 원산지 규정을 서술하여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노덕률은 그의 연구에서, 스파게티볼 효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공도와 수입건당 금액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수입건 수가 많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원산지규정을 이해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입는 것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⁶⁾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특정 국가의 FTA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 규정을 비교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FTA 주요 원산지규정 및 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FTA 원산지규정 협정문의 기본적 프레임워크(Framework)는 일반적으로 ‘일반적 원산지규정(General rules)’과 ‘품목별 원산지규정(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적 원산지규정은 총칙 규정의 개념으로 전체 주요 품목이나 특정 품목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특정 품목별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일반적 원산지 규정(General rules)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되나,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보완하고 결정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충적 원산지규정도 있다. 이들 각 결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최창환, “다양한 형태의 FTA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12.27, pp.510-511.

26)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볼 현상의 결정 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0.02, pp.1-21.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일(一)국에서 제품을 완전히 생산하거나 획득된 물품(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one country)의 경우 그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이러한 천연상품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어 그 이용이 제한적이다.²⁷⁾

2) 실질변경기준

실질변형기준은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최종적,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매우 복잡한 규정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며 크게 3가지(세번변경기준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 : value contents criterion, 특정공정기준 ; criterion of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로 나누어 규정된다.²⁸⁾

①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²⁹⁾(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CTC)은 수입된 재료, 다시 말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³⁰⁾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제조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완제품의 세 번이 상이할 경우, 이러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에 기초하여 2단위 변경(change of chapter : CC), 4단위 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 : CTH), 6단위 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 : CTSH) 등이 있다.

②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 : VC)³¹⁾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27) John J. Barcelo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 06-049, Cornell Law School, pp.2-5.

28) 정인교, 전게서, p.29

29) 예를 들어 라이터의 원산지가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할 때,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0000)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HS 6단위가 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만일 라이터의 원산지가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정인교, 전게서, p.29).

30)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한 분류를 의미한다.

31) 부가가치기준은 정확하게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환율, 임금 등의 생산비용의 변화, 효율적인 비용절감 기술 등장, 원산지확인을 위한 행정비용 유발, 국가들간 이익분배의 불균형 초래, 투입재료에 대한 정확한

창출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그 방법으로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최소 부가가치비율에 의한 방식(domestic or region value content : RVC), 최종제품과 수입원재료 가격의 차이에 의한 방식(imported content : MC), 부품가치에 의한 방식(value content : VC)으로 구분된다.³²⁾ 이처럼 원산지결정방식에서 부가가치기준은 단독으로 이용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화학적 결합이나 선택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지칭된다.³³⁾

<표 1> FTA 원산지규정 중 부가가치에 의한 원산지결정 기준

구분	공제법/집적법 선택	공제법	MC방식	공제법/집적법 선택
기준 가격	FOB	FOB	EXW	FOB
부가 가치 공식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RVC = \frac{VOM}{AV} \times 100$	$RVC = \frac{CV - VNM}{CV} \times 100$	$MC = \frac{\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제품가격}} \times 100$	$RVC = \frac{FOB - VNM}{AV} \times 100$ $RVC = \frac{VOM}{FOB} \times 100$
부가 가치 수준	공제법 : 45% 이상 집적법 : 30% 이상	45% ~ 55%	40% ~ 70% (공제법 환산시)	40%

※주 : 1) 공제법 : Build-Down method(BD)/집적법 : Build-Up method(BU)
 2) RVC :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함량, AV : 조정가격(제품기준가격), VNM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VOM : 원산지 재료의 가격, CV : FOB 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
 MC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가 재 구성.

③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은 주로 섬유나 의류분야에 사용되며 제조과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보완적으로 사용된다.³⁴⁾ 이는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

부가가치 산출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2)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전계서, pp.29-35.
 33)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전계서, pp.76-77.
 34) Estevadeordal. Antoni, "Mapping and Measuring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Trade Forum, the 16th General Meeting,

준이 특정가공공정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를 들면, 커피는 볶음 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된다. 특정공정기준의 사례로 섬유류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섬유류 부문에서 국내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패브릭포워드(Fabric Forward)³⁵⁾ 였으나 한·미 FTA협상결과 미국의 방식을 받아들여 안포워드(Yarn Forward)³⁶⁾ 원칙으로 결정된 바 있다.

3) 보충적 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 혹은 실질변형기준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전부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절대성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일례로, 원산지 결정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와 부가가치가 수출국 내에서 일어나고, 아주 미세한 부분의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판정의 절대성은 제품 생산에서 중대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도입되며 그 종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산지 결정에 대한 보충적 기준

구분	내용
미소 기준	· 미소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함.
누적 기준	·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산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함. · 특혜를 받는 국가의 범위에 따라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나누어짐.
흡수방식 (롤업 방식)	·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최종제품의 중간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이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해당 중간 부품의 비원산지 재료도 역내산으로 간주함

PECC, 2005, p.74.

35) 원사가 아니라 제직단계부터 시작해 염색과 봉제공정까지 자국 수행으로 하는 의류제품 원산지 기준이다.

36)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구분	내용
불인정공정/최소가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가리킴. -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 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직접운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역외가공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연구보고서」1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30, pp.53-54.

IV.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 기준의 비교

1. 한국 주요 FTA별 원산지규정의 분석

1) 한·미 FTA원산지규정

한·미 FTA 문헌의 원산지 규정은 상품 전반에 관련된 조항인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부속서로서 “6-가 :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록 6-가-1 :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섬유와 관련되어 “제4장 섬유 및 의류”의 부속서로서 “4-가 :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있으며 개성공단의 제품을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향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의 부속서 “22-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조항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중 제6.1조 원산지 상품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철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 2) 상품이 부속서 4가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위에서 나타난 원산지 규정의 6.1조 원산지 상품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나”의 1)에 따르면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 4가 와 6가에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사항이 규정하고 있다. 세번변경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나”의 2)에 따르면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6장 제6.2조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역내가치포함비율에서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³⁷⁾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직접법)도 사용되고 있다.³⁸⁾ 그러나 자동차 상품의 경우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자동차제품을 위한 순원가법으로 지칭하고 있다.³⁹⁾ 마지막으로 “다”에 따르면 원산지 재료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다면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문헌의 제6.5조 ‘누적⁴⁰⁾’부분에서는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하여 역내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

37)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38)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39)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40) 6.5(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는 누적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제조할 때 역외산 원부자재의 가격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 FTA 문헌의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에서는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도입하여 곡물·석탄·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가능한 재료⁴¹⁾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⁴²⁾ 후입선출법⁴³⁾ 등과 같은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 FTA 문헌에서 상품에의 적용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상품별로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의 조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39류에 해당하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에 해당하는 고무와 그 제품은 세번변경기준을 따른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을 따르는 방식도 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발생기준을 병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집적법 35% 이상, 공제법 45%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품목에 있어서만 이외에도 순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2) 한·EU FTA 원산지 규정

한·EU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협정문의 문헌에 서술하지 않고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절차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 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로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의정서는 원산지판정의 일반원칙과 관세환급 또는 면제,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검증 등의 원산지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⁴⁴⁾도 동 의정서의 부속서 2(Annex II)에 나타나 있다. 즉,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하고, 각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EU 원산지의정서에 나타난 원산지관련 문헌은 4개의 부속서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41)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는 원료의 종류나 성질이 동일하여 국산, 외국산 구분 없이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42)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43)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44) List or Working of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on Materials in Order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can Obtain Origination Status

45) 부속서 I : 제 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 1부
부속서 I의 부록 : 부록1 “부록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먼저, EU 원산지의정서에 나타난 EU의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있다. 원산지의정서 제2조 및 제4조는 ‘특혜관세의 목적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wholly obtained in a Party)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로 규정하여 원산지판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을 인정한다.⁴⁶⁾ 그리고 한국과 EU는 완전생산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을 적용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원산지결정 방식으로 이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변형된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HS 2단위, HS 4단위, HS 6단위)기준으로 변경되어야 당해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EU FTA에서도 다른 FTA와 유사하게 실질변형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과 선택적 또는 결합적으로 적용된다.⁴⁷⁾

한편, 한-EU FTA에서도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방식이 이루어지며 공제법⁴⁸⁾, 직접법⁴⁹⁾, 순원가법⁵⁰⁾이 사용되지만 특히, MC(Import Content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차지하

부록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 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부록3 “제 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부록4 “영역원칙의 면제”

46) 원산지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하여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낚시,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의 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사. 당사국의 국기를 계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조된 상품
-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47) 채형복 · 황해륙, “한·EU FTA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02, pp. 610-611.

$$48)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 100$$

$$49) \text{역내가치차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 100$$

$$50)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 100$$

는 비중)⁵¹⁾ 방식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방식은 만약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이하(예 ; 공장도가격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서도 특정공정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증한다.

상품생산 관련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누적계산과 최소허용수준이 있다. 누적계산은 불인정공정⁵²⁾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 상품생산에 사용된 FTA 상대국의 재료는 원산지를 인정한다. 이 사실은 FTA 상대국의 재료에 대해 동일한 상품을 재수출이나 불인정공정만 거친 경우에는 기존 원산지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소허용수준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ASEAN FTA원산지규정

한·ASEAN FTA에서는 상품분야에서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을 채택하였다. 상품협정은 본문, 3개의 부속서, 품목군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Annex)는 부속서 1(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부속서 2(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⁵³⁾, 부속서 3(원산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민감품목 리스트(Sensitive List)와 초민감품목 리스트(Highly Sensitive List)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ASEAN의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있다.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

51) MC(Import Content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 비원산지 재료 가격/제품가격(Ex Works Price) * 100

52) 상품을 보전시키는 공정, 운송을 촉진시키는 공정, 그리고 판매를 위한 포장 등의 공정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

53)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던 반면 민감품목군은 관세감축, TRQ, 양허제의 대상이다.

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⁵⁴⁾ 또한,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은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⁵⁵⁾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고 언급되어 있다.⁵⁶⁾ 그밖에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으로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은 집적법, 공제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었다.⁵⁷⁾

5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딛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5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입,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2.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한·미 FTA와 한·EU FTA별로 별다른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에서는 양국의 영해 내에서 취득되거나 양식된 어획물, 영해 밖의 경우 당사국에 등록되어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취득된 외획물 및 생산물에 대해서 완전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EU FTA에서도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덧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조된 상품,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ASEAN FTA에서도 1)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덧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계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계약당사국의 선박(계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계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계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

57) 1) 제1호 나 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접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계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당사국 또는 계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계약당사국 또는 계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계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계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실질변형기준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s),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이러한 구분에 의한 원산지결정 기준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합되어 함께 이용된다.⁵⁸⁾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규정으로써 일반적으로 실질변형기준으로 분류된다.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와 한·EU FTA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역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집적법과 공제법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미 자동차 분야 FTA에서는 순원가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ASEAN FTA에서도 직접과 공제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 산출시 이용되는 제품가격기준의 경우, 한·미 FTA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 FOB)⁵⁹⁾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여 품목에 따라 집적법과 공제법 중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한·EU FTA는 공장도가격(Ex-works price)⁶⁰⁾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

58) 즉,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A User's Handbook, pp.36-39 참조).

59) '본선인도가격'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60) '공장도가격'이란 최종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⁶¹⁾ 한·ASEAN FTA도 본선인도가격(FOB)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원산지를 정하는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EU는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⁶²⁾,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하면서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은 보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⁶³⁾

V. 결론

최근 가장 이슈 중 하나는 스파게티볼 효과로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산지규정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이며, WTO에서도 제품이 생산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제품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며, 특별무역협정이 증가하고 많은 국가들이 물품의 생산지에 따라서 유사한 수입물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3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해서 일국에서의 완전생산 여부가 적용되거나(완전생산기준), 둘째, HS 코드의 변경, 국내생산물품의 포함 비율(부가가치 비율), 특정공정(기술)로 요약된다.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 분석 결과, 완전생산기준은 한·미

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하며, 공장도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국세를 공제한다.(원산지의정서 제1조 바호)

61) 채형복·황해록, 전계서, pp.610-611.

62) 이재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10, p.342.

63) 예를 들어, 석유제품의 경우 EU는 예외 없이 정제공정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물의 경우에도 EU는 방직공정(weaving)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계·전자제품의 경우 EU는 대부분 부가가치기준을 이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FTA와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은 별로 별다른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s),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 산출시 이용되는 제품가격기준의 경우, 한·미와 한·ASEAN FTA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 FOB)을 기준으로 한·EU FTA는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계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조세연구포럼, 2010.04, p.44.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30, pp.7-8.
-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1~24.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볼 현상의 결정 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0.02, pp.1-21.
- 박성용,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12, p.129.
- 손동준,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세학회, 2008.08, pp.152-142.
- 신한동,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02, pp.273-275.
- 안재진,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12, pp.5-6.
- 안재진,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06, pp.225-226.
- 윤영호,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2009.07, p.79.
- 이제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10, p.342.
-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 05-21』,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pp.24-29.
- 정재완,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세학회, 2008.08, p.122
-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연구보고서1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30, pp.146-147.
-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

- 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02, pp.253-254.
- 최창환, 「다양한 형태의 FTA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12.27, pp.510-511.
- 채형복·황해륙, 「한·EU FTA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02, pp.599-600.
- Antoni Esteveordal(2005), “Mapping and Measuring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Trade Forum, the 16th General Meeting, PECC, p.74.
- 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 “Rules of Origin: Evolving Best Practices for RTA/FTAs” Discussion Paper Series, No.2006-01,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January 2006, pp.1-18.
- John. Coyle, Rules of Origin as Instrumen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An Analysis of the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2004, p.545.
- John J. Barcelo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 06-049, Cornell Law School, pp.2-5.
- Matthew. Schaefer, “Ensuring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lement the wto system : US unilateralism a supplement to wto initia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Law*, Vol.10, No.3, 2007.07.30, pp.589-590.
- OEC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ultilateral Tradeing System : Rules of Origin”, TD/TC/WP(2002)33/FINAL,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2002.07, pp.7-8.
- Richard Baldwin(2006.09), “Multilaterilising Regionalism :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 1254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22-31.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handbook_en.pdf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1] [기획재정부령 제227호, 2011. 7.29, 일부개정]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Jae-Woo Jung* · Kil-Nam Lee**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rules of origin among Korea and USA, EU, ASEAN.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a product for purposes of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two common types of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preferential an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certain purposes.

The basis for the non-preferential rules originates from the Kyoto convention which states that if a product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ompletely withi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emed having origin in that country. For a product which has been produced in more tha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termined to have origin in the country where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ook place.

To determine exactly what was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hree general rules are applied :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on any level, though 4-digit level is the most common), Value added-rule.(ad-valorem), and Specific process rule.

While criteria of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one country is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se area and countries, in compliance with value percentages of Substantial Transformation,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Korea-US FTA adapts 'Regional Value Content', meanwhile Korea-EU FTA adapts 'Import Content' rule. Finally, Korea-US FTA and ASEAN FTA adapt FOB price for the calculation value added, on the other hand Korea-EU FTA adapts EXW price.

Key Words : Rules of Origin, criteria, Korea and USA, EU, ASEAN,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Value Content, Specific process rule

* Part time Lecturer, Chung Ang University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